

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합103857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1. 영농조합법인 A
2. B
3. C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원
담당변호사 엄기은, 임영기, 한상철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은 300,212,581원 및 그중 300,212,45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영농조합법인 A과 연대하여 위 300,212,581원 중 241,450,815원 및 그중 241,450,748원에 대하여각 2021. 4. 20.부터 2021. 6. 2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A과 피고 C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20. 11. 13.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영농조합법인 A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0. 11. 13. 접수 제463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영농조합법인 A, B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영농조합법인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2)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실행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D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원금 2억 5,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A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7. 6. 16. D은행에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14. 피고 A과 사이에 추가로,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D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원금 6,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2018. 7. 11. D은행에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제1, 2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2) 원고의 대위변제 및 일부 회수

가) 피고 A은 2020. 12. 23. D은행과의 대출약정상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 D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은 원고는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4. 20. D은행에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41,756,532원과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59,052,063원 합계 300,808,595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0. 피고 A으로부터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금으로 305,784원(1일간 연체이자로 67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305,717원을 원금에 충당),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금으로 290,630원(1일간 연체이자로 63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290,567원을 원금에 충당)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A과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1. 13.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0. 11. 13. 접수 제4632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A과 피고 C은 피고 A의 구상금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도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C은 피고 A과 2008년 이전부터 거래를 해오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에 대하여 507,109,515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 A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가치가 채무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 A은 원고와 제1, 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구상금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피고 A은 2020. 12. 23.부터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D은행에 대위변제하기 전이라도 제1, 2 신용보증약정 제6조에 따른 사전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초과 상태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2, 13, 14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시가 301,262,65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834,361,240원 상당의 충주시 E, F, G, H 및 그 지상 건물 등 그 가액이 합계 1,135,623,89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D은행에 대한 477,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I은행에 대한 947,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J에 대한 224,321,500원 상당의 채무, 피고 C에 대한 507,109,515원 상당의 외상대금채무 등 그 가액이 합계 2,155,433,015원이므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피고 A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C에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의 융통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A에 신규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써 피고 A의 자금난이 해결되었다거나 피고 A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의 주장에 의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신규자금의 융통을 위한 담보의 의미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5억 원을 상회하는 기존 외상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며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23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65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 피고 A의 납입출자액의 총액은 4억 원에 불과한 점, ○ 피고 A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피고 A은 2020년 전까지 피고 C에 대하여 507,642,635원 상당의 채무가 이미 존재하였고, 그로부터 11개월 이상 지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도 507,109,515원 상당의 채무가 잔존하는 등 오랜 기간 출자액이 넘는 채무를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이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봉조, 판사 김가영, 판사 이정훈

별지

목 록

1. 충청북도 충주시 공장용지 818㎡

2. 충청북도 충주시 동호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120.24㎡

3. 충청북도 충주시 동호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157.99㎡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나. 피고 영농조합법인 A는 원고와 사이 제1, 2 신용보증약정 체결에 따른 주채무자이고, 피고 B는 위 제1신용보증약정 상 연대보증채무자입니다.

다.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영농조합법인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입니다.

2.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청구권 발생

가.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서의 발행

1) 원고는 채무자회사와 사이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 신용보증약정서, 갑 제2호증의 1, 2 신용보증서 각 참조).

신용보증약정	보증종류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한	보증금액	연대보증
제1신용보증약정	대출보증	2013. 09. 11	2014. 09. 10.	255,000,000원	B
제2신용보증약정		2018. 08. 14.	2019. 08. 13.	64,000,000원	-
합 계				319,000,000원	

2)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채무자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 할 경우,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

10조 “상환범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①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1.보증채무이행금액, 2.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대위변제수수료, ②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비용과 1.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나. 신용보증서의 발행

1) 제1신용보증서 발행

원고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9. 11. 소외 D 은행 제천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에 보증번호 K ,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10.(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에 의하여 보증기한이 2021. 9. 3.로 변경됨)로 하는 제1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신용보증서, 갑 제3호증의 1내지7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 각 참조).

2) 제2신용보증서 발행

원고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8. 8. 14. 소외 은행에 보증번호 L , 보증금액 64,000,000원, 보증기한 2019. 8. 13.(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에 의하여 보증기한이 2021. 8. 13.로 변경됨)로 하는 제2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2 신용보증서, 갑 제3호증의 8, 9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 각 참조).

다. 대출의 실행 및 대출금의 미변제

보증사고통지서 각 참조).

라. 구상금 청구채권의 발생

원고는 채무자들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소의 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여 채무자들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보증	대위변제기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대위변제금 잔액
제1보증	D 은행	2021. 04. 20.	241,756,532원	305,784원	241,450,748원
제2보증			59,052,063원	290,360원	58,761,703원
합 계			300,808,595원	596,144원	300,212,451원

마. 지연손해금 및 확정손해금 발생

각 발생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기간별 손해금률 변동표, 갑 제8호증 확정손해금 계산내역 각 참조).

바.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게,

- 1)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은 300,212,581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241,450,748원+제2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58,761,703원+제1보증 확정손해금 67원+제2보증 확정손해금 63원) 및 그 중 300,212,451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241,450,748원+제2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58,761,703원)에 대하여,
- 2) 피고 B는 피고 영농조합법인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300,212,581원 중 241,450,815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241,450,748원+제1보증 확정손해금 67원) 및 그 중 241,450,748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하여
각 2021.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끝.

